
Policy and Law Report _Vol.19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31.~8.6.) -

August 7,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7/31~8/6)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금융감독원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선위 사업재편 승인(7.12) 등으로 투자 계약증권 최초 발행(8월중)이 가시화됨에 따라 '23.7.31.자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였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內)을 운영하여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공시·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자보호 강화)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 유도 -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 -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 마련 등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한 사업재편 요건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기존 사업자(한우·미술품 5개사)</th><th>신규 사업자</th></tr> </thead> <tbody> <tr> <td>요건</td><td>① 도산절연 장치, ② 투자자 예치금 별도예치, ③ 설명자료·광고기준 마련, ④ 분쟁처리·피해보상계, ⑤ 사업중단시 제3자 업무수행체계</td><td>좌 등</td></tr> <tr> <td>절차</td><td>증선위 승인 : 사업재편 조건부 제재 면제</td><td>공시 : 동일수준의 사업구조 구비*여부</td></tr> <tr> <td>목적</td><td>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td><td>좌 등</td></tr> </tbody> </table> * 동일 수준 사업구조 미비시, 그 사유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재 필요 ②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기준 제시 -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근거 마련 -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 허용 등 ③ (시장이해도 증진)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해도 증진 -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 기재(FAQ 형식) -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 마련 등		기존 사업자(한우·미술품 5개사)	신규 사업자	요건	① 도산절연 장치, ② 투자자 예치금 별도예치, ③ 설명자료·광고기준 마련, ④ 분쟁처리·피해보상계, ⑤ 사업중단시 제3자 업무수행체계	좌 등	절차	증선위 승인 : 사업재편 조건부 제재 면제	공시 : 동일수준의 사업구조 구비*여부	목적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좌 등	2023-07-31
	기존 사업자(한우·미술품 5개사)	신규 사업자												
요건	① 도산절연 장치, ② 투자자 예치금 별도예치, ③ 설명자료·광고기준 마련, ④ 분쟁처리·피해보상계, ⑤ 사업중단시 제3자 업무수행체계	좌 등												
절차	증선위 승인 : 사업재편 조건부 제재 면제	공시 : 동일수준의 사업구조 구비*여부												
목적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좌 등												

부처	내용	일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 및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함 * 표준 해석사례는 개인정보위(심사총괄담당관실)에서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 및 국민신문고 5,230건에서 30건을 발췌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음 * 기관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 ('21년 4,122건→ '22년 4,666건→ '23년 상반기 2,723건)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임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는 ①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②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20.7)」 ③ (영상정보) 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사유·보관기간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마련하여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관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간 별도 보관할 수 있음 ④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됨	2023-07-31

부처	내용	일시
	⑤ (제도일반) 가상화폐인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관리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그 자체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IP주소와 연계할 수 있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계정 명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3.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투자개요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 제1호다목, 별표 1 제2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등)	2023-08-0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3. 시행)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년도까지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4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제29조의2 신설 등)	2023-08-03
국토 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3. 시행)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맞추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4쪽의 제10조)	2023-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11.2. 시행 예정. 다만, 제2조제10항제1호사목3),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담보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적정성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권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대출성 상품의 범위 축소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 증권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적정성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보가치가 변동될 우려가 적고 상환일과 상환액이 확정된 ‘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②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제3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제34조제1항) - 금융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합의권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조정안 작성 기한을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안 작성 기한(조정을 회부받았을 때부터 60일 이내)을 따르도록 명확히 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로 합의권고가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을 지명하고, 금융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조정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023-08-0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검증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공시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정보보호 공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업무의 위탁 (안 제27조제2항) -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위탁하고자 함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 (안 별표2) -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별(1~3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8/1(화)~9/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로 제출	2023-08-0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14조제2항)	2023-08-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② 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 (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의견 제시기간 : 2023/8/4(금)~9/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 기업에 대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대상 완화 (안 제36조의7제5항) -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8/4(금)~9/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	2023-08-04
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	2023-07-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이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제명) ②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으로 순환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재생원료 등을 정함 (안 제2조) ③ 순환경제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④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방법 및 절차,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과 산정·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과오납금의 환급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함 (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 의견 제시기간 :2023/7/31(월)~9/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	2023-07-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 (안 제2조) ③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④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안 제19조) ※ 의견 제시기간 :2023/7/31(월)~9/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3-07-3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폐기물 분류체계에 포함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체분비물 자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정폐기물 종류 명확화 (안 [별표 1]) -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②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 (안 [별표 2]) -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 ※ 의견 제시기간 :2023/8/4(금)~9/15(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3-08-0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되,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023-08-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설치 등 추가 (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 신고자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할 있도록 대상 추가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 어업·양식업용 품목을 배출하는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②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안 제10조)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③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 (안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별지 제4호의14서식])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기준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는 방법 - 대행 계약 체결 및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 -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서식 신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 (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에 수직형으로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 신설 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인 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 명확화 (안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⑥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명확화 (안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변경 ⑦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명시 (안 제20조) - 법에서 위임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⑧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보관기한 개정 (안 제31조, [별표 7]) -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 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 자
	⑨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 (안 제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 → 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기준의 구간 축소* * (3구간) 소형(200kg/hr미만),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2구간)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하여 50kg/hr 적용 ⑩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 (안 제50조)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 명확화 ⑪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 추가 (안 제66조제3항) - 폐지, 고철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 ⑫ 지정폐기물 세부분류 명확화 (안 [별표 4]) - 폐기물 세부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세부항목 추가 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안 [별표4]) -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번호 신설 ⑭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재활용 유형 추가 (안 [별표 4의3]) -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4, R-4-7을 추가 - 이산화탄소포집물 재활용 유형에 R-4-2, R-4-3, R-4-4를 추가 - 폐벽돌·폐블록·폐기와 재활용 유형에 R-1, R-2를 추가 ⑮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다량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용 (안 [별표 5·7]) -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허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는 다량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무실 등 구비한 것으로 간주 ⑯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처리 관련 기준 보완 (안 [별표 5]) -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등 - (보관) 물질간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채광·조명 설비 설치 -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및 증기발생 시 처리기준 등 ⑰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 (안 [별표 5의3])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⑱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 (안 [별표 9])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관 재료, 배관 도장, 누출 방지, 마감처리, 역류차단, 계측장치 설치 등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①9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보완 (안 [별표 10]) - 정기검사(고온소각시설) 항목에 배관 재료·강도·두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시설 항목 등 ②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요건에 열분해시설 추가 (안 [별표 10의2]) -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등 요건 마련 ※ 의견 제시기간 :2023/8/4(금)~9/15(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 적기 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 (안 제41조제7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적기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② 가산금 일할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규정 (안 제32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386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일할 산정 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납부지연 가산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준용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수)~9/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	2023-08-0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u>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u>」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붙임1의 [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②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3조) ③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방통위는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제출절차 및 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안 제4조) ④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안 제5조) – 처리기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기 가능 ※ 의견 제시기간 :2023/8/4(금)~8/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로 제출	2023-08-0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1인)」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기자재 제작 등 제조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연동·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8 신설)	2023-07-3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법·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2023-08-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42조제3호 및 제43조제3호 신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9년 1월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조제7호 신설)	2023-08-0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3-08-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안 제12조제2항 신설) ③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④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3조제2항 삭제) 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하여 고정 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3항 신설)	2023-07-3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더욱이,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	2023-08-01
행정안전위원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중 이사에 대해서만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법률 제19329호)의 부칙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9329호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령에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급박하게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2025년 3월 12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2023-08-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0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승인건수 3배 이상 증가, 1조원 이상의 매출·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5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 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초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②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6항) ③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 (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법정 인적·물적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2023-07-3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⑧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거짓 · 과장 · 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의4제7항제4호 신설) 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판매 · 이용 · 제공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 · 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9항, 제10조의7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⑫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⑬ 법인 합병 · 분할, 사업의 양도 등 사유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의8 신설) ⑭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18조제2항) ⑮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로 입주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2023-08-0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그런데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입주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인재의 채용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신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 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인 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핵 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 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 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2023-08-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 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3-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기술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에 더해 추가로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갱신 및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성능인증과 관련된 신청접수·심사·성능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위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안 제5조제6항 신설) ②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최초 3년, 추가 3년 이내 연장에서 최초 4년, 추가 4년 이내 연장으로 확대 (안 제16조) ③ 성능인증 신청접수·심사·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2023-08-01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2023-08-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지속적인 수출활성화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관이 부재하고 신속 제품화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국가 표준물질 부재 및 임상 검체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함 이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을 신속히 평가하여 긴급히 대비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체외진단 제품의 국가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개발 및 임상검체 확보·관리 등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서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성능평가로 정의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③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을 설립함 (안 제24조의2 신설)	2023-08-04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최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023-08-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 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③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안 제7조) ④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8조부터 제13조까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 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 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⑦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6조)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 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 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 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 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 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 56조제3항·제4항, 제162조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2023-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여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채용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따른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거짓의 채용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에 관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채용광고보다 낮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채용광고를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8조의2, 제16조)	2023-08-03
국토교통위원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그 채용비율을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2023-08-0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출신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7항)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우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신설 (안 제2조 및 제3조) -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분양 업무 중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나 분양하려는 부동산의 판매 전략 수립 및 판매 촉진 등의 업무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 ②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안 제4조) - 분양대행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③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안 제5조) -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 또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2023-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 (안 제10조) -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도록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⑤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⑥ 협회의 설립 (안 제14조 및 제15조)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⑦ 벌칙 및 과태료 (안 제19조 및 제21조) -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분양대행업을 한 자,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다른 등록사업자의 전문인력이 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8/7(월)	「이달의 입법민원」(2023. 7월호) 발간	
국회도서관	8/2(수)	「팩트북」 제103호 발간 - 호명: 탄소중립	
	8/9(수)	금주의 서평 제640호 발간 - 도서명: 파묻힌 여성 - 저자: 마릴렌 파투-마티스	
	8/9(수)	「World&Law」 제2023-16호 발간 - 위태로운 필수의료, 어떻게 지켜야해?	
	8/10(목)	「현안, 외국에선?」 제64호 발간 -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	
입법조사처	8/8(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지방세 이양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연구원	8/8(화)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냐, 성숙사회냐」 배포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7(월) 14:0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승수 의원실	켄싱턴호텔 여의도15층
8/8(화) 10:00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 - 건강한 생애 첫 출발 1000일	백종현 의원실,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8(화) 14:00	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여기구·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9(수) 14:00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최재형 의원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8/10(목) 10:00	대한민국 국권 회복 과정과 한의사의 독립운동	홍익표·윤주경 의원실, 대한한 의사협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0(목) 10:00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0(목) 10:00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강성희 의원실,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0(목) 14:00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김주영·박찬대·이학영·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0(목) 14:00	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인순·강기윤·고영인· 최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호 뉴스레터(제19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8/4(금)	국회 법제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 -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수상 우수법률안 및 평가기준 소개	
국회도서관	8/2(수)	금주의 서평 제639호 발간 - 도서명 : 각자도사 사회 - 저자: 송병기	
	8/2(수)	「Data&Law」 제2023-7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입법조사처	7/31(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 -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8/2(수)	「NARS Brief 제13호」 발간 - 지방소멸 시대 지역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토론회	
	8/4(금)	「이슈와 논점」 제2120호 발간 - NATO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	
미래연구원	7/3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3호 발간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한·미·일 비교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31(월) 14:00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창립 기념 국회 포럼」 -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31(월) 14:00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임호선·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화) 09:30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성희·민형배·용혜인· 이은주·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 지난주 (7/31~8/6)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7/31(월)	노동	무기계약직과 사회적 신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7/31(월)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7/31(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8/1(화)	조세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8/1(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추가 신청요건 COMPASS
8/2(수)	조세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
8/2(수)	자동차·모빌리티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시행이 관련 업계 및 입법과정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아야
8/2(수)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